☎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, 교통행정과
(당산동3가, 영등포구청 별관 1층)
TEL : (02)2670-4125, 4234, 4235
FAX : (02)2670-3640
0 7 2 5 6

타E인 영등포

동서울우편집중국
요금별납

「교통량 감축프로그램」에 참여해 보세요.
참여한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드립니다.
자세한 사항은 http : //s-tdms.seoul.go.kr/

※ 미사용/주거용 신고서 : 뒷면 작성

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/주거용 신고 안내

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(사)께 감사드립니다.
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이 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』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월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부과대상기간 중 30일 이상 **미사용(공실)** 또는 **주거용 시설물**에 대하여 **미사용/주거용 신고를 하시면, 해당 기간만큼 감면**해 드리니 기한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
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안내 】

○ 부과대상기간 : 2019. 8. 1. ~ 2020. 7. 31.
○ 부과대상시설 : 연면적이 1,000㎡ 이상인 시설물 중 본인 총 소유면적이 160㎡ 이상인 경우
○ 부 과 대 상 자 : 2020. 7. 31. 현재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
○ 납 부 기 간 : 2020. 10. 16. ~ 2020. 10. 31.
○ 부담금 산정 : 소유면적 × 단위부담금(1㎡당) × 교통유발계수

단위부담금(1㎡당) – 각 층 바닥면적의 합 기준	3,000㎡ 이하	3,000㎡ 초과 ~ 3만㎡ 이하	3만㎡ 초과
	700원	1,200원	1,800원

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신청(미사용/주거용) 안내 】

○ 감면대상 : ① 부과기간 중 미임대(공실) 등으로 **30일 이상 연속하여** 미사용한 시설물
② 시설물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○ 신청방법 : 시설물 미사용/주거용 신고서(뒷면 작성)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제출
※ 주거용일 경우 신고서 용도란에 **"주거용"**으로 표기
○ 증빙서류(뒷면참고)

미사용(공실) 증빙서류	주거용 증빙서류
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(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) 임대차계약서(미임대 확인할 수 있는 것) 수도 · 전기 · 가스(요금) 내역서, 휴폐업 증명서 등	전입세대열람내역 등

○ 제출방법 : 우편 및 팩스(FAX: 2670-3640) 송부
※ 가급적 우편발송을 요청드리며, 팩스 전송시 **반드시 수신확인 요망**
○ 제출기한 : 2020. 8. 31. 까지
☆ 미사용/주거용 신고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! ☆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시설물 미사용/주거용 신고서

신고인	① 성 명 (법인명)		② 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
	③ 주 소 (도로명)	(전화 :)		
부과대상 시설물	④ 시 설 명			
	⑤ 소 재 지 (도로명)			

미 사 용 / 주 거 용 내 용

⑥ 동 및 층 호수	⑦ 기 간	⑧ 해당 면적(㎡)	⑨ 용 도	⑩ 사 유

『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』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미사용/주거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영등포구청장 귀하

첨 부 서 류	▶ **미사용 증빙서류** 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(세무서 또는 세무사 확인 ☞ 직인과 명판 있어야함) ※ 실적이 없으면 무실적으로 확인 후 발급 ② 임대차계약서(미임대 확인할 수 있는 것) ③ 공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수도 · 전기 · 가스(요금) 내역서 또는 관리비 내역서 ④ 휴폐업 증명서 ⑤ 기타 미사용(공실)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(판결문 등) ▶ **주거용 증빙서류 :** 전입세대 열람 등 ☞ **증빙서류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신고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**

영등포구청 교통행정과 TEL : (02)2670-4125, 4234, 4235 FAX : (02)2670-3640